발 표 자 료
'02. 8 .12

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변경 내용 및 고려사항

2002. 8. 12

이 병 욱
(포스코경영연구소)

대기배출부과금제도 변경 내용

1. 초과·기본부과금 통·폐합

o 벌과금 성격의 초과부과금을 폐지하여 기본부과금으로 통합

o 기준초과여부와 상관없이 오염물질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

2. 부과대상 오염물질 축소조정(10종 → 3종)

o 오염기여율이 높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배출되는 먼지,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부과대상으로 선정

- 그간 부과실적이 저조한 특정유해물질 및 배출량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악취 등은 제외

3.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조정

o 현재의 오염물질 단위중량당 처리비용을 부과금액으로 결정

- 방지시설 운영비 및 오염물질처리량 등에 대한 환경부 자체조사결과 반영

(단위:원/kg)

항 목	현 행	조정(안)	비 고
먼 지	770	560	전기 및 여과 집진시설 (제철·발전시설)
황산화물	500	350	습식 석회석-석고법 (발전시설)
질소산화물	-	1,060	SCR, SNCR, 저NOx버너 (발전시설)

배출부과금=오염물질배출량(kg/일)×**단위중량당 부과금액**(원/kg)×**가동일수×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**

4. 부과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대형사업장으로 국한

o 오염물질 소량 배출사업장을 부과대상에서 제외

- 현행 종별구분에 의한 1~3종 배출업소 2,259개소의 실제배출량을 토대로 부과대상 사업장수를 최소 수준으로 선정

<표 1> 오염물질배출량 기준 부과대상범위 선정안

구 분	먼 지	황산화물	질소산화물
부과기준 대상 사업장수(추정)	0.3톤/년 이상 1,800개소	1톤/년 이상 1,400개소	5톤/년 이상 1,000개소

5.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시 공인자료만 인정

o TMS 및 오염도검사기관(국립환경연구원, 시·도, 지방환경관리청, 환경관리공단)의 측정자료만을 활용하고 자가측정자료는 불인정

6. 기타 불합리한 제도 폐지

o 저황유사용시설 면제 및 농도별부과계수

o 최적방지시설에 대한 면제

o 지역별부과계수

-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음

⇒ 특정지역(특별대책지역, 대기환경규제지역 등)에 대한 오염물질 편중 예방 및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부과계수 강화방안 검토 필요

고려사항

1.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

o 제도변경에 따라 관련업계에 매년 약 5,65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o 특히, 양회업계에 추가적으로 부담될 1,400억원은 2001년도 동업계의 영업이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임.

<표 2> 제도 변경에 따른 산업계 추가부담 금액(억원)

◦ 발전	2,600	◦ 제지	200
◦ 양회	1,400	◦ 정유・석유화학	800
◦ 철강	650	◦ 합계	5,650

o 철강업계의 배출부과금 대상 물질별 추가 부담금액

(단위: 백만원)

	2001년(A)	향후(B)	B-A
먼지	230	6,621	6391
황산화물	302	17,053	16,751
질소산화물	0	41,952	41,952
합 계	532	65,626	65,094

자료: 철강업계 조사

2. 배출부과금 요율산정 방법 및 기준

o 배출부과금 요율은 오염물질별 처리비용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, 부과금 요율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(기준 자료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).

(단위: 원/kg)

	현행	1차 공청회[a]	조정안[b]	비고
먼지	770	5,096	560	전기 및 여과 집진시설 (제철·발전시설)
황산화물	500	463	350	습식 석회석-석고법 (발전시설)
질소산화물	-	1,040	1,060	SCR, SNCR, 저NOx버너 (발전시설)

주:[a] 국립환경연구원(1999년)에서 산출한 것으로, 2001년 11월 16일, KEI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임.
- 먼지: 전기집진시설 이외에 세정, 여과, 원심력, 흡착시설 등의 시설별 평균한계비용의 평균
- 황산화물: 화력발전소 기준
- 질소산화물: 조정안과 산출기준이 같음

[b] 2002년, 5월 28일 환경부 회의자료임.

o 요율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는 BATNEEC 원칙에 근거한 산정방법이 바람직함.

3. 부과대상

o 대형사업장(1~3종) 대상 부과: 소규모 사업장 면제 별도 검토 필요

o 질소산화물은 대도시 대기오염, 특히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적 접근

o 청정연료 권장 시책에 따라 LNG 사용시설을 도입하였으나, 질소산화물을 새롭게 배출부과금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투자를 발생시키고 있음.

o 세수중립적 차원의 환경세 검토, 세금 환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오염도 개선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상생정책 필요

5. 오염물질배출량 산정

o 배출부과금의 근거가 되는 배출량은 TMS와 공인기관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음.

o 그런데, TMS의 안정성과 공인기관 측정시 시료채취의 시기와 배출기간의 결정에 있어 적합성에 이견이 있음. 즉,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생산라인의 조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.

o 따라서 시료채취 시기,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

6. 오염물질 저감기술 가능성 검토

o 오염물질 측정시설, 저감기술 등에 대한 국내 기술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입장에 있음. 특히, 질소산화물의 저감기술의 경우 국내기술의 상용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.

- 기존 국내의 기술의 경우, 안정성·경제성·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시되고 있음.

o 또한 기술을 보유한 선진 외국사의 경우 기술이전 회피는 물론 고가의 기술이전료를 요구하고 있음.

☞ 우리 나라 대기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, 새로운 제도가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,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력 등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할 때, 정책의 발효 시점은 학계, 전문가, 해당산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.

▷ 산업계의 기술개발 노력 촉진을 통한 국내기술의 기반구축

▷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

토의안건

▶ 추진일정: 명확화 및 구체화

▶ 이해당사자 의견수렴

▶ 측정 및 저감기술 관련 기술적 여건

▶ 배출부과금 요율 산정 기준 및 방식